



음악 전공실기지도강사 채용계약서

전 공
음악

음악 전공실기지도강사(시간강사)를 채용하는 계원예술고등학교장을 “사용자” 라 하고,
음악 전공실기지도강사(시간강사)를 “근로자” 라 하여 다음과 같이 채용계약을 체결한다.

제1조(계약당사자)

사용자	근로자
주 소 :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불정로 100	주 소 :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불정로 100
학교장 : 계원예술고등학교장	성 명 : 김계원 생년월일 : 0000.00.00.

제2조(임무) 음악 전공실기지도강사(시간강사)로 근무하는 “근로자” 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.

- ① “근로자” 의 전공에 따라 배정한 수업을 한다.(전공 악기: 성악, 주 수업시수: 1시간)
다만, 일대일 수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수업 요일과 시간은 학생과 협의하여 정하고 시행하기로 한다.
- ② 매주 학생의 실기지도 내용을 전공실기지도카드에 작성해(해당 학년도 3월~7월, 8월~익년도 2월) 연 2회 본교에 제출한다.
- ③ 강의(전공실기지도) 장소는 본교 레슨실 및 연습실 또는 강사와 학생의 협의 하에 지정된 장소로 한다.

제3조(계약기간) ①계약기간은 2025. 3.~2026. 2.로 하며, 수업은 방학기간을 포함하여 매월 실시한다. ②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별도의 통보 없이 계약을 종료한다.

제4조(채용구분) “근로자” 는 계원예술고등학교의 음악 전공실기지도강사(시간강사)로 채용되어 근무한다.

제5조(강사료지급방법)

- ① “근로자” 의 월 강사료는 80,000원으로 하며(학생 1명 기준) 방학기간을 포함하고 강사료는 사업소득으로 신고되어 원천세 3.3%(소득세, 지방소득세)를 공제한다.
- ② 강사료는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. 강사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일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.
- ③ “근로자” 는 본 계약에 규정된 보수 이외에는 일체의 다른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.

제6조(계약의 해지) ① “사용자” 는 “근로자” 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1.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한 때
 2. 신체·정신상의 이상으로 계약기간 내에 계약 내용을 수행하기 곤란한 때
 3. 복무상 의무를 위반한 때
 4. 채용 자격에 결격사유가 있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, 다만,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에는 제외(단, 혈중 알코올 농도 0.03% 이상으로 음주운전 적발 시는 해임 가능)
 5. 부당한 방법으로 채용된 경우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채용된 적이 있는 경우
 6. 기타 동 계약서에 의한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는 경우
- ②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“사용자” 는 “근로자” 에게 보수를 정산하여 지급한다.

제7조(기타)

- ① 휴가와 휴일은 근로기준법에 따르되, 초단시간 계약이므로 연차휴가와 유급주휴일은 적용하지 아니하며, 계약서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계약제 교원(시간강사) 임용 및 위촉에 관한 규정과 관계 법령에 따른다.
- ③ “근로자” 는 ‘계약제 교원(시간강사) 임용 및 위촉에 관한 규정’ 에서 정한 사항을 모두 숙지하였음을 확인하며, 자유로운 의사로 본계약을 체결한다.

2025년 1월 17일

(사 용 자)	(근 로 자)
학 교 명: 계원예술고등학교	주 소: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불정로 100
주 소: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불정로 100	생년월일: 0000.00.00.
대 표 자: 계원예술고등학교장 박선중 ㉠	성 명: 김계원

김계원



음악 전공실기지도강사 채용계약서

전 공
음악

음악 전공실기지도강사(시간강사)를 채용하는 계원예술고등학교장을 “사용자” 라 하고,
음악 전공실기지도강사(시간강사)를 “근로자” 라 하여 다음과 같이 채용계약을 체결한다.

제1조(계약당사자)

사용자	근로자
주 소 :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불정로 100	주 소 :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불정로 100
학교장 : 계원예술고등학교장	성 명 : 김계원 생년월일 : 0000.00.00.

제2조(임무) 음악 전공실기지도강사(시간강사)로 근무하는 “근로자” 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.

- ① “근로자” 의 전공에 따라 배정한 수업을 한다.(전공 악기: 성악, 주 수업시수: 1시간)
다만, 일대일 수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수업 요일과 시간은 학생과 협의하여 정하고 시행하기로 한다.
- ② 매주 학생의 실기지도 내용을 전공실기지도카드에 작성해(해당 학년도 3월~7월, 8월~익년도 2월) 연 2회 본교에 제출한다.
- ③ 강의(전공실기지도) 장소는 본교 레슨실 및 연습실 또는 강사와 학생의 협의 하에 지정된 장소로 한다.

제3조(계약기간) ①계약기간은 2025. 3.~2026. 2.로 하며, 수업은 방학기간을 포함하여 매월 실시한다. ②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별도의 통보 없이 계약을 종료한다.

제4조(채용구분) “근로자” 는 계원예술고등학교의 음악 전공실기지도강사(시간강사)로 채용되어 근무한다.

제5조(강사료지급방법)

- ① “근로자” 의 월 강사료는 80,000원으로 하며(학생 1명 기준) 방학기간을 포함하고 강사료는 사업소득으로 신고되어 원천세 3.3%(소득세, 지방소득세)를 공제한다.
- ② 강사료는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. 강사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일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.
- ③ “근로자” 는 본 계약에 규정된 보수 이외에는 일체의 다른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.

제6조(계약의 해지) ① “사용자” 는 “근로자” 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1.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한 때
 2. 신체·정신상의 이상으로 계약기간 내에 계약 내용을 수행하기 곤란한 때
 3. 복무상 의무를 위반한 때
 4. 채용 자격에 결격사유가 있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, 다만,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에는 제외(단, 혈중 알코올 농도 0.03% 이상으로 음주운전 적발 시는 해임 가능)
 5. 부당한 방법으로 채용된 경우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채용된 적이 있는 경우
 6. 기타 동 계약서에 의한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는 경우
- ②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“사용자” 는 “근로자” 에게 보수를 정산하여 지급한다.

제7조(기타)

- ① 휴가와 휴일은 근로기준법에 따르되, 초단시간 계약이므로 연차휴가와 유급주휴일은 적용하지 아니하며, 계약서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계약제 교원(시간강사) 임용 및 위촉에 관한 규정과 관계 법령에 따른다.
- ③ “근로자” 는 ‘계약제 교원(시간강사) 임용 및 위촉에 관한 규정’ 에서 정한 사항을 모두 숙지하였음을 확인하며, 자유로운 의사로 본계약을 체결한다.

2025년 1월 17일

(사 용 자)	(근 로 자)
학 교 명: 계원예술고등학교	주 소: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불정로 100
주 소: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불정로 100	생년월일: 0000.00.00.
대 표 자: 계원예술고등학교장 박선중 ㉠	성 명: 김계원

김계원